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2. 26.(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허 욱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1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3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1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1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제11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및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계획(안)에 관한 건 (2020-12-052)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2쪽입니다. 의결주문은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2020년 1월 28일에 (주)마금이 신청한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5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심사항목입니다.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변경승인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신청자의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승인 여부 및 승인조건 등을 의결하게 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시면 3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3월 말에는 위원회 의결 및 사업자 통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대구MBC의 현재 최다주주는 51%의 주식을 보유한 서울MBC입니다. 그런데 (주)마금이 작년 12월 32.5% 지분을 확보 후 2대 주주가 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고, 곧 7.5%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과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최다액출자자가 있는 상황이지만 3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주)마금이 방송법상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법률 검토 결과입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해야겠지만 이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주)마금이라는 법인의 그동안 실적과 사업영역으로 볼 때 대구MBC의 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마금은 주식 100%가 최다액출자자 남상현의 가족 소유이고, 최근 3년간 휴업을 하던 중에 작년 7월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하고 11월 이사회를 통해 대구MBC의 주식 취득을 의결했습니다. 등기부상 사업항목을 보면 기업 인수 합병 관리 및 자문, 부동산 관리 및 매각, 부실채권 관리 및 매각 컨설팅 등인데 휴업 전인 2014년 실적을 보면 직원은 1명이고, 자본금 1억 7,000만원에 매출액 4,929만원, 영업이익 -4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별도의 영업외수익이나 추가 증자가 없었다면 자본이 완전 잠식되고 부채만 남아서 사실상 폐업된 회사로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실적의 회사를 되살려서 대구MBC 주식 지분 32.5%를 취득했는데 매입대금을 사모펀드를 통해 조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방송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주식 취득 후에 배당금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마금은 대구MBC의 경영상 이익보다는 사옥 이전에 따른 사옥 매각 차익이나 방송사 인근 상권 개발 등 지역방송사의 영향력을 통해 2대 주주의 사적 이익을 도모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심사과정에서 (주)마금의 대표자 의견청취를 반드시 실시해 주식 취득의 목적과 취득자금내역, 특히 사모펀드의 조성과정과 운영 기한, 약정 수립 및 투자금액 회수 방법 등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고 방송사업자 2대 주주로서의 공적인 책무 수행 의지 능력과 또한 그러한 의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었는지를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앞서 허 욱 위원님이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는 (주)마금을 보면 직원 1명뿐인 이런 회사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조된 페이퍼컴퍼니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이것이 휴면 중인 어떤 회사를 급히 인수해서 주식인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상 사업목적은 보면 기업 인수합병, 부동산 관리, 부실채권 관리,

매각 컨설팅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M&A 전문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대구MBC 방송이 혹시나 기업 사냥꾼의 표적이 되거나 투기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는 일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방송사업자로 나서는 분은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을 내세워야지, 방송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특히 지역문화 발전, 또 지역 사회 기여, 사회 이익의 환원을 모범적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방송사업자로서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이번 심사에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까 허 욱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32.5% 주식을 매입한 것은 자본력을 앞세워서 사모펀드를 모집해서 그렇게 인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가가 나면 또 더 많이 인수해서 40%까지 주식을 인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반드시 자세히 들여다봐서 이것이 자본력을 무기로 해서 주식 매집을 통한 방송 경영 지배력을 노려서 방송사업보다는 오히려 경영권을 장악해서 결국은 주식 매각을 통한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목적이라면 절대로 승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를 하면 방송사업자의 자격 문제, 특히 방송을 하고 싶어 하는 목적, 의도, 방송 철학, 또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심사 항목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사회적 신용 같은 부분도 해당됩니다. 시청자의 권익보호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철저하게 점검되어서 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특히 대구MBC는 시내 요충지에 사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곽으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매각 대금 차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사냥꾼들이 탐을 내는 과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마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민 방에도, 또는 지역방송사에도 이런 기업 사냥꾼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철저히 심사해서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심사가 되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아시는 대로 지상파방송은 특히 공공성 그리고 공적책임이 강조되는 매체입니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을 경영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앞에서 존경하는 허 욱 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다른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방송과 시청자 분야를 묶어서 한 분으로 해놓았는데 이 경우 이와 같은 우려를 잘 보려면 방송분야는 별도로 봐야 하고, 그리고 시청자 분야도 따로 떼서 심사위원을 한 분 더 늘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 분야 하나 더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심사위원회 구성에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마금이라는 회사의 주식 인수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지상파방송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의 자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20-12-071)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으로 “(유)누누, (주)웰티즌,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주), (주)네모, 가온소프트웨어(주), (주)유넷컨버전스, (주)나이스천사, (주)비에이치소프트, 아바드(주), (주)원앤아이, 엠포플러스(주), (주)머케인, (주)모션, (주)긴트, (주)위지엘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과한다”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길 위함입니다. 주요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신청 공고·접수가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있었으며, (유)누누 등 총 19개 법인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허가신청법인의 주요현황은 <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격사유 조회로서 임원 결격여부, 법인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결격사항이 없었으며, 법인 여부는 모두 다 정상이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심사기준인 심사기준 항목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시 적격 판정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 (유)누누 등 총 15개 법인은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취득하여 적격으로, 에이맨시스템(주) 등 총 4개사는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부족으로 총점 70점에 미달하여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허가조건은 위치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만일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에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 안건은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 사안입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등·하원 어린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서 출결 여부를 알리는 서비스 제공업체 14곳이 신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이 의무화 되어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들이 지난 심사에 이어 이번에도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결과를 보면 과거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어서 재신청한 알림서비스 4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중 2개는 적격, 2개는 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4개 사업자는 지난 1차 심사 때 탈락한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신청한 업체들입니까?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4개 업체는 1차 때 신청했던 업체들입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자료를 보완해서 이번에 다시 신청한 것이고, 그중의 두 곳은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지요?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진입규제가 있는 사업분야입니다. 따라서 심사 때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설비 규모의 적정성과 기술적인 능력, 그리고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신청 2개 사업자를 포함해서 이번에 탈락한 3개의 알림서비스 사업자들은 위치정보 사업을 위한 필수장비인 위치정보시스템의 배치계획과 세부 사양, 그리고 위치정보 처리의 흐름도, 체계 기술 및 품질 목표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8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위치정보 보호 방안 등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에 대한 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과 사무처가 면밀하게 심사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신청은 많이 받되 심사는 엄격하게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통학차량, 또 등·하원 학생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서 출결사항을 체크하고 학부모에게 알리는 시스템인데 우후죽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많이 신청했었으며 탈락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이번에 다시 허가를 받는 업체도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업체에 '이런 부분이 미흡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부분을 잘 알려져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심사채점표 평가결과를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기술은 되는데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런 부분이 6점, 8점 만점에 거의 다 미달입니다. 거의 수준을 맞춰 주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위치정보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락 제도는 없지요?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과락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이 되니까 허가를 받았다고 들어오는 것인데 또 재무구조가 되니까 사업을 벌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과연 위치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어쨌든 평가결과는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업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좀 더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런 부분 점수가 낮게 나오면 허가가 어렵겠구나 하는 부분을 시장에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저희가 허가 접수할 때도 다시 교육을 시키고, 허가지원센터가 있어서 사업자들이 자료를 만들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유의점으로 해서 다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돈벌이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정보를 어떻게 보호·관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없으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이 형식적으로 허가제인데 실질적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가가 되는 형식으로 되어서 등록제 비슷한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도 자체를 개선해서 등록제로 하되, 사후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이런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저희가 작년 6월에 이미 변재일 의원을 통해 등록제로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그것이 통과되면 시행령 고시 등 하위 작업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렇게 대비해서 일종의 규제 완화 차원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가>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대상 및 세부적인 고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연구반을 운영하여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9조의2(고발)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기본원칙은 위원회의 행정처분만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매우 심대하여 이용자의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제3조 고발대상 및 고발기준입니다. 고발대상은 위반행위가 법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고발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제64조의3제1항 과징금 부과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받는 경우,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상, 신념, 병력 등 민감 정보로서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파기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범죄 목적 등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고발기준에도 불구하고 조사협력 여부,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범위반전력 여부,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수사기관 이첩입니다. 고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1,000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규모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첩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의견진술입니다. 심의 시 관계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2월 27일자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붙임>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대상 및 고발 기준을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반행위 중 벌칙 위반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발 여부를 판단해 왔지만 국회의 지적을 수용해서 구체적 기준을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고발기준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마련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를 정비하고 규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고발 대상과 6가지 고발기준 모두 타당하며, 수사기관의 이첩 기준 역시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준 제정안 제2조의 기본원칙에서 밝힌 대로 행정처분만으로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개인정보의 침해 정도가 매우 심대해 이용자의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발한다는 원칙을 지켜서 고발권 남용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뒤늦게 국회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서 우리가 고발의 대상과 기준을 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본원칙을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개인 정보 침해 정도가 매우 심대할 경우 이렇게 한정해서 기본원칙을 세운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많이 고발이 들어갈 것입니다. 또 수사기관에 이첩되는데 이것이 수사기관에 이첩되고 고발되어서 실질적으로 수사가 벌어지는 수사가 진행되어서 처벌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통계에 잡힌 것이 있습니까? 건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동안 수사기관 이첩은 몇 건 했었고, 지난 12월에 고발도 3건을 했었는데 현재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담당 직원이 고발인 조사도 받은 바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이첩한 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것이 고발건수가 너무 많아지면 수사기관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걸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실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조건 고발만 하면 우리 손을 떠난 것이다, 우리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행정력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이것이 제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기준에 보면 예외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따져 보고, 또 6개 조항의 위반, 1개라도 위반이 되면 무조건 고발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기계적인 고발 행정행위를 벗어나서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할 사항은 고려하고, 특히 영세사업자, 미처 그런 부분들을 갖추지 못한 이런 업체를 무더기로 고발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또는 고발한다는 부분은 잘 넣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역시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국회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런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점도 있지만, 향후 본격적인 5G 시대에 대비해서 개인의 정보보호를 더 강화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고발기준의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면서 동시에 고발조치를 해왔는데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맹점이 있어서 이번에 보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6가지 세부 고발 기준을 마련한 만큼 일선에서 저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역시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표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일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방송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경기방송은 방통위가 부여한 조건의 일부를 이행해서 여러 가지 경영이 정상화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경기방송이 이사회를 열어서 예상되는 경영의 어려움, 그리고 노사 간 갈등 등의 이유로 해서 더 이상 방송사업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물론 3월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총 날짜까지 의결하면서 방송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 사상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스스로 방송사업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례가 처음입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취자의 권익보호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방송유지 명령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다른 조건을 부여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바로 방송 사업을 접게 되면 후속적인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 사안은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이 들어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우리가 면밀히 지금부터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방송정책국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처장님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재허가 신청을 했을 때 심사한 결과, 상당 부분 점수가 미흡해서 재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던 사항을 조건부로 재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시청권을 보호하고, 또 직원들, 구성원들에 대한 갑자기 실직을 하는 것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건부 허가가 나갔던 것입니다. 아직 시쳇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자기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경영진이 자진폐업을 결정하고 방송허가를 반납하겠다는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행정청의 재허가 행정행위를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반발하는 행태로 보입니다. 아까 어떤 안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문을 남기기 위해 방송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이유가 경영이 어려워졌다? 경기방송은 지금까지 적자 없이 충실하게 흑자를 내면서 방송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방송이고, 주파수 99.9MHz도 대단히 좋은 영역의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30년간 운영해 온 어떻게 보면 아주 견실하고 모범적인 방송을 경영진들이 '경영이 어렵게 됐다' 이것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지금 적자가 발생해서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영이 어렵겠다', 갑자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던 지원금이 뚝 끊어질 것 같고, 또 노조가 계속 경영진을 괴롭히니까 우리는 접어버리자, 도대체 이런 무책임한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 방송을 하는 것입니까?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문을 닫아버리겠다? 노조에 대해서는 '당신들 직장 한번 잃은 아픔을 당해 보라' 이런 식의 결정이 과연 방송사업자로서 할 결정이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재허가가 난지 바로 직후에. 그래서 이것을 행정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고민해 봐야겠지만 자진폐업을 결정해서 방송허가를 반납하면 바로 접수해서 받아주어야 하는지, 자동적으로 받아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로 나앉는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경기도민들의 사랑을 받던 애청자들, 좋은 양질의 방송을 내서 흑자도 냈는데 그것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유지명령도 저는 1년간 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방송유지명령은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허가나 재승인을 거부할 때만 해당됩니다. 현행 방송법상의 사업자가 임의로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이나 휴업할 때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후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제가 이런 발언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들리는 소문은 오너에게 이렇게 계속 방송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지금 노조에 시달리고 지원금도 끊기니까 앞으로는 계속 적자가 발생할 텐데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매각 처분하면 부동산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너로서는 훨씬 이익이라고 해서 제일교포인 오너를 설득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도덕한 일입니다. 왜 30년간 방송을 해 온 전통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돈벌이를 위해 방송을 접어버리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접수해서 받아줄 것이 아니라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주문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이 스스로 폐업하고 허가권을 반납하겠다고 이야기한 경우 그 자체를 막을 수 없지만 청취자의 청취권 보호를 위해 방송시설 매각금지나 방송시설의 다음 사업자에 대한 이전 부분들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실무 검토를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당장 자의로 방송을 중단하고 폐업을 하면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상파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서 방송을 재개할 때까지 상당 기간 걸리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청취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법규들을 적극 해석해서 기존 방송시설로 사용하던 이런 부분들을 매각금지를 해서 누군가 제3자가 그 시설을 이용해서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방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 사업자의 경우에 재허가 접수가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취자의 고려해서 '조건부 재허가'를 한 경우인데 이후의 경영 상황 악화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기타 정치적인 이유 이런 이야기까지 소문을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허가 접수에 미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권을 고려해서 조건부 재허가를 해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폐업하고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현재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방송사업 자체를 김석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익적 목적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고, 마치 영리 추구의 도구로 생각한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재허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재허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허 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상임위원

-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조건부 재허가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노조 문제와 미래 수익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방송사업권을 반납하고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런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해 원칙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만약 주춤에서 폐업 결정이 나면 방송사업권을 반납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원칙은 명확해야 한다고 보는데, 첫째는 시청권 보호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직원들 고용대책,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유지 및 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행정명령으로 나갈지, 법원의 판정을 받을지 등등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제대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이 문제를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것은 제가 지난번 재허가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보던 사항이고, 이것이 실제로 반납을 하고 주총에서 폐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방송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대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권을 완전히 반납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우리가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할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예견됩니다. 방송이 중단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생각해서 긴급히 말씀드렸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자세로 방송사업을 하는 경영진이 스스로 폐업을 결정하고 방송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계속 그 자리에 둘 수 없겠지요. 퇴진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방송이 중단되고 지역 청취권은 보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취자 권익도 보호가 되어야 하니까, 예를 들어 비대위 체제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 사회에서 비대위를 꾸려서 임시 경영진을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방송만 중단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 과도기를 어떻게든 방송은 중단 없이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만 합니다. TF팀을 빨리 조속히 꾸려서 그런 것 포함해서 어떻게든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시고, 이런 결정을 한 경영진은 퇴출시켜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전체적인 의견에 동의합니다. 모든 심사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방송 경영진들의 무책임한 결정이나 손실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손실이 예측된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방송을 접겠다는 행위들을 면밀하게 검토 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이번에 최종 결정까지 두고 봐야겠지만 이미 경기방송 이사회에서 경영진들은 자기네들이 방송사를 경영할 공공성이나 공익적 정신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정말 시청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TF팀 이야기까지 했는데 저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법률적인 검토를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다각적으로 방통위가 어떤 식으로 대응 내지 복구책을 마련하느냐가 앞으로 시금석이 된다는 그런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추가 의견 있으시면 더 하시고,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향후

대책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청취자들의 청취권 문제이고, 그다음으로는 현재 방송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용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여 폐업 이후 대책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3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1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폐회】